담 당	책임자

이전 가입자 명부(DC,기업형IRP용)

유 의 사 항

①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**만기약정금리를 보장받지 못하고**, 이보다 낮은 **중도해지 금리가 적용**됩니다.
② 일부 펀드상품의 경우, 가입 후 단기간(예: 6개월) 내 **펀드를 해지할 경우에 환매수수료가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
③ **담보대출, 질권설정** 등의 사유로 **이전이 제한**될 수 있습니다.
④ 실물이전 신청 전에 가입자가 **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진행 중**인 경우 **실물이전 신청이 취소**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보유 중인 상장상품(ETF, 리츠 등)이 실물이전 불가로 판명된 경우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가입자가 일정기한 내 해당 상품을 직접 매도해야 하며, 매도하지 않으면 **실물이전 신청이 취소**될 수 있습니다.
⑤ 실물이전을 신청하시기 전에 **반드시 실물이전 가능여부를 조회**하시기 바랍니다.
⑥ 실물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조회되었더라도 실제 이전과정에서 상품별 특성에 따라 실물이전이 되지 않을 수 있고, 이 경우 별도의 **가입자 안내없이 자동으로 매도**되어 현금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. 자동으로 매도가 될 수 없는 상품(ETF 등)의 경우 **가입자가 직접 매도**해야 합니다.
⑦ 실물이전 신청 시 **상품 전부의 이전 신청만 가능**합니다. 상품 중 일부는 실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전하는 형태는 불가합니다.
⑧ **현금성 자산**을 보유한 상태로 이전 시 계속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고, 별도 운용지시 희망 시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릅니다.
⑨ 실물이전을 신청한 가입자는 LMS, 알림톡 등 온라인 방법으로 개별 가입자 의사확인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 기재란에 **가입자의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작성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 방법으로 의사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화를 통한 의사확인이 필수로 진행됩니다.
⇒ 현금이전 또는 실물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**가입자 명부의 개별 연락처로 그 결과를 통지**하여 드립니다.

이전하는 금융회사 (운용관리기관명)	이전받을 금융회사		성명	주민번호	연락처	실물이전여부 1. 현금 2. 실물	서명/날인
	운용관리기관명	자산관리기관명					
						1 또는 2 기재하세요	

※ 다수 → 다수 금융회사로의 이전을 병기할 수 있음(복수의 접수처에 사본제출도 가능)

5-20-0012(1-1) (2024.10 개정)
(보존년한 : 해지일로부터 10년)

하나은행